

의안번호	제439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10월 24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43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10월 2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케이-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)
- 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(안 제5조)
- 전담기구의 설치·운영 및 경비의 지원(안 제6조)
-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케이-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케이-바이오 스퀘어”(K-BIO SQUARE)란 첨단 바이오 핵심기술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,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, 기업·병원·상업·금융·주거 시설 등을 혼합 배치하는 공간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케이-바이오 스퀘어의 체계적·효율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분석
2.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동향과 발전 전망
3. 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기본방향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첨단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,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5. 첨단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첨단 바이오산업의 동향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사업
2. 국내외 의료기관, 연구소, 기업, 학교 등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
3.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사업

제6조(전담기구) ① 도지사는 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케이-바이오 스퀘어의 조기 조성을 위해 국내외 기관,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 도지사는 케이-바이오 스퀘어와 관련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,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생명공학육성법

제3조(정부 등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(제11조제4항 관련)

○ 첨부제의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4항 제1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○ 사 유

- 안 제5조(케이-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), 안 제6조(전담기구의 설치·운영 및 경비의 지원), 안 제8조(지식재산권 보호) 등 의안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구성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.

○ 작성자

-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정책과장 변 인 순